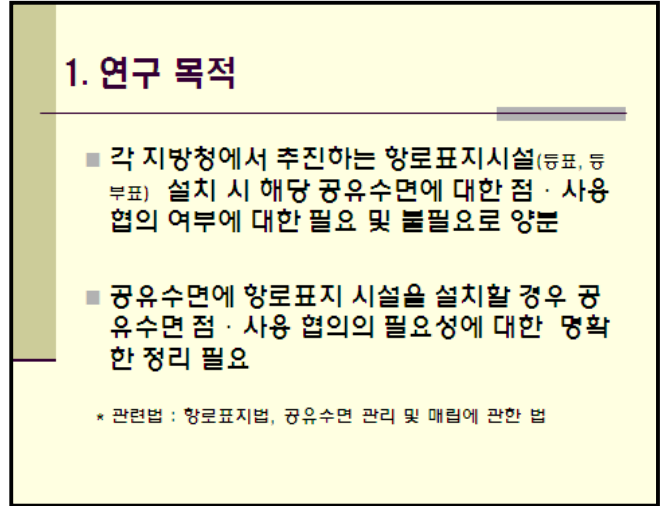


# 항로표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·사용협의를 관한 연구

† 박 권일 · 최 수봉\* · 김 강은\*

† \*국토해양부, 대산지방해양항만청

**요 약 :** 각 지방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로표지시설(등표, 등부표) 설치 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·사용 협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, 또한 공유수면에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의 필요성과 관련된 항로표지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알리고자함



† 교신저자 [pki1007babo@korea.kr](mailto:pki1007babo@korea.kr)

## 공유수면 내 암초에 등표 설치전경



## 2 각 지방청별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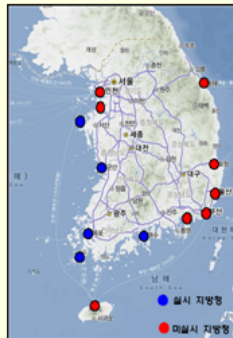
## 2. 각 지방청별 협의 현황 조사

### ■ 실시 지방청 : 5개 지방청

- ※ 여수청, 순산청, 대산청, 목포청, 진도소

### ■ 미실시 지방청 : 8개 지방청

- ※ 부산청, 인천청, 마산청, 동해청, 평택청, 울산청, 제주청, 포항청



## 3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관련 법 검토



## 3.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법적 검토(1)

### ■ 공유수면이란?

-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류(水流) 또는 수면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인 바다, 하천, 호소(湖沼) 등

### ■ 공유수면 관리는 누가?

-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, 시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

## 3.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법적 검토(2)

### ■ 항로표지법 제9조(허가, 인가 등의 의제)

- 제 5조 4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·관리의 허가를 받거나 제8조 1항의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 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※ 제5조 4항 :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항로표지  
 제8조 1항 : 침선부표 설치 관련  
 제8조 2항 : 준설·매립·구조물 설치등 공사목적으로 항로표지설치 시

➡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는 수행 필요없음

### 3.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법적 검토(3)
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(적용배제 등)
    -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항만구역 내 및 밖의 **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, 고시한 시설**
    - 어촌, 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어항구역 내 및 밖의 **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, 고시한 시설**
- ※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 중 기능시설에 **항로표지시설** 명기

### 3.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법적 검토(4)

-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(**공유수면의 점용, 사용 협의 또는 승인**)
   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,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,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➔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는 필요

### 3.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법적 검토(5)

공유수면 점·사용에 대한 허가나 협의를 취하지 않은 지방청의 이유?

- 항로표지법 제9조(허가, 인가 등의 의제)
  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(적용배제 등)
- 이유로 관리지자체에 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또는 허가 등 신청하지 않고 항로표지 시설을 설치함



### 4. 연구결과(1)

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 여부



### 4. 연구결과(2)

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를 실시이유?

- 허가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!**
- 항로표지법 제9조(허가, 인가 등의 의제)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, 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점용,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#### 4. 연구결과(3)

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를 실시이유?

**협의를 아셔야 합니다!**

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
(공유수면의 점·사용 협의 또는 승인)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,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점용,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**협의**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

#### 5. Q & A?



탈무드의 공부법  
**질문은 스스로 만들어라!**



토론은  
**문제해결의 과정이다!**

